

지하수개발·이용 []신고증
[]변경신고증

신고인	성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(전화번호:)		
신고사항	위치		
	좌표(경도, 위도) ,	용도(세부 용도)	먹는물 사용 여부
	굴착 깊이 m	굴착 지름 mm	
	취수계획량 m³/일		
	동력장치 HP	토출관 안쪽 지름 mm	
	펌프 설치 깊이 m	양수능력 m³/일	
	신고(변경신고) 내용		

의
에
에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

지하수개발·이용자 유의사항

지하수개발·이용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경우 변경신고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◆ 신고한 사항 중 지하수개발·이용 용도,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 - *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- *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해당 지하수개발·이용이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지하수법」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- ◆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14조의4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정비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 - *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이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 - ◆ 지하수개발·이용자는 「지하수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 - * 「지하수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- ◆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,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할 수 없는 경우, 지하수의 개발·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는 지하수개발·이용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.
 - *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- ◆ 지하수개발·이용기간이 끝난 경우, 지하수개발·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 「지하수법」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.
 - * 「지하수법」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※ 이 유의사항은 「지하수법」의 관련 규정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「지하수법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